

##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

# 『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』 시범 사업 추진 계획

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,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서비스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
### I 추진근거 및 경과

####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19조(사회적응훈련) 및 제53조(자립생활지원)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거주시설·주간활동·돌봄지원) 및 시행규칙 제19조(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(자립생활지원)
- 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

#### 추진경과

- 서울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요구 및 협의('16. 7.)
  - 발달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체계 마련 요구
-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미래현안 TF회의('16. 8.)
  - 서울형 발달장애인 주거 모델 개발 용역 진행 요구
-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학술용역('16. 9 ~ '16. 12.)
  -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형 발달장애인 거주생활지원 모델 개발
  -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방안
- 거주생활 지원모델 시범 운영(안) 관련 논의 ('17. 4. 24. / 5. 26.)
  - 운영 주택수, 입주 자격, 운영사업자 자격 등 논의(요구단체, 연구자, 관련 전문가 등)
-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 모델 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('17. 7. 7.)
  - 모델 개발 용역 결과 발표 및 시범 운영(안) 안내, 전문가 토론

## 필요성 및 개념

### □ 도입 필요성

- 기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은 주로 시설장애인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**독립생활 욕구 증가**에 따른 **대안적인 주거 모델**이 필요함
- 기존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운영기관이 입주자를 선정, 관리함으로써 개인별 선호도 및 서비스 요구에 맞는 독립적인 주거생활 지원에 한계가 있음
- 따라서, 발달장애인이 **자신이 선호하는 주택**에서 **원하는 서비스를 제공**받을 수 있는 자립생활을 전제로 한 **새로운 주거서비스 지원정책**이 필요함

### □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개념

- **서비스 제공기관**이 지역 거주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별 욕구에 맞추어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**주거 관리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**

#### ※ 지원주택이란?

**주택과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지원 모델**, 적절한 지원 없이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 계층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

- 자신이 생활하게 될 집을 스스로 선택(소유, 또는 임차) 하고
- 주거 생활 전반을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주택

#### < 지원주택과 전통적 거주시설의 주거서비스 비교 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지원주택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거주시설, 그룹홈 등</b></p>
<p>장애인이 이용(선택) 가능한 주택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서비스 이용</p>	<p>운영법인의 주거시설 내에서 운영법인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이용</p>

# 현황

## □ 서울시 발달장애인 현황

○ 연령별 현황 :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전체의 70%임

(‘16. 12월 현재, 단위:명,%)

구분	합계	9세이하	10~19	20~29	30~39	40~49	50~59	60~69	70세이상
합계	30,258 (100%)	2,410 (8)	6,729 (22.2)	8,180 (27)	5,159 (17.1)	3,862 (12.8)	2,450 (8.1)	1,046 (3.5)	422 (1.3)
지적	25,215 (100%)	1,394 (5.5)	4,830 (19.2)	6,454 (25.6)	4,814 (19.1)	3,813 (15.1)	2,442 (9.7)	1,046 (4.1)	422 (1.7)
자폐	5,043 (100%)	1,016 (20.1)	1,899 (37.7)	1,726 (34.2)	345 (6.8)	49 (1.0)	8 (0.2)		

## ○ 발달장애인 지속 증가 추세

- 최근 5년 등록 장애인수는 감소하고 있으나, 발달장애인수는 매년 평균 2.8% 증가하는 등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

(‘16. 12월 현재, 단위:명)

구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발달장애인 (증가율)	27,099 (2.9%)	27,903 (2.9%)	28,808 (3.2%)	29,885 (3.7%)	30,258 (1.2%)
전체 장애인 중 비율	6.6%	6.9%	7.2%	7.6%	7.7%
총 등록 장애인	407,528	403,435	398,908	392,068	391,027

## □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현황(유사주택 비교)

구분	발달장애인 지원주택	자립생활주택 (다형)	공동생활가정	탈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(시범운영중)
목적 및 기능	재가 발달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서비스 함께 제공	자립전 일정기간 (최장7년) 거주 하며 자립체험	지역 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기간 제한 없이 공동생활	시설 발달장애인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서비스 함께 제공
이용대상	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	거주시설 퇴소 발달장애인	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	거주시설 발달장애인
서비스내용 (제공자)	주거생활지원계획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(주거코치, 상주 가능)	자립체험 지원 (코디네이터, 미상주)	일상생활지원 (사회재활교사, 상주)	자립체험 및 독립생활 지원 (시설종사자, 미상주)
주택계약 주체	- 자기형 : 개인 - 체험형 : 서울시	서울시, 운영기관	서울시, 운영기관	운영기관
개소수/인원	10개소/약20명(예정)	8개소/16명	180개소/607명	8개소/15명
입주인원 (주택 당)	1인~ 3인	2~3인	4인	2~3인

# IV

## 추진계획

### □ 추진방향

- **체험형(공공주택) 및 자가형(개인주택) 주택 병행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성 향상**
  - 일정기간 자립 체험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 및 서비스 지원방식 다양화
  - 주택별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로 지역사회 주거모델 안정적 확대
- **중증발달장애인 포함 운영하여 향후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**
  - 개인별 필요서비스에 따라 지원 인력 제공(중증 집중지원, 경증 간헐적 배치 등)
  - 장애 정도별 서비스 지원 수준의 변화 연구를 통해 서비스 종결, 유지 판단 기준 마련

### □ 추진개요

- 추진기간 : 2017. 7. ~ 2019. 12.
- 사업내용 :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체계 시범 운영
- 지원내용 : 체험형 주택, 운영사업자(서비스 제공기관)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
- 운영사업자 : 1개 기관 ※ 사업자 공모 계획 별도 수립
- 운영규모 : 주택 10호
  - 공공주택(체험형) : 5호(양천구 소재 SH 공공임대, 서울시 확보) - 붙임
  - 개인주택(자가형) : 5호(소재지 미특정, 개인확보, 운영사업자 선정 후 결정)
-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자격

구분	내용
장애유형	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지적 또는 자폐성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·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
연령	만 18세 이상
욕구	지역사회 내 독립생활(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)을 하고자 하는 사람
지원욕구	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
소득 및 자산기준	별도 기준 없음 ※ 단,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저소득층 우선 입주
입주조건	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 ※ 지원 필요 사유 발생 시 별도 검토
기타	체험형 주택 입주자는 시범사업 종료 시 개인주택 확보하여 되거 필수, 되거 이후 지원서비스 지속, 종결 여부는 별도의 심사로 결정 ※ 퇴거 후 독립 거주 공간 확보 계획을 입주대상자 선정 시 고려

○ **소요예산 : 707,598천원**

- 지원주택 운영기관(인력 2명, 운영비 등) : 111,798천원
- 지원주택(주택 확보, 주거코치 약 10명, 운영비 등) : 595,798천원
- ※ 시범운영 특성상 예산 범위내 채용인력 등 변경 가능

□ **주거서비스 주요내용**

- **주거서비스 지원은 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전문인력(주거코치)이 제공**
  - 개인별 주거생활지원계획 작성, 주거서비스 이행, 평가 등
- **주거서비스는 크게 필수서비스, 선택서비스로 구분**
  - 이용자가 독립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되는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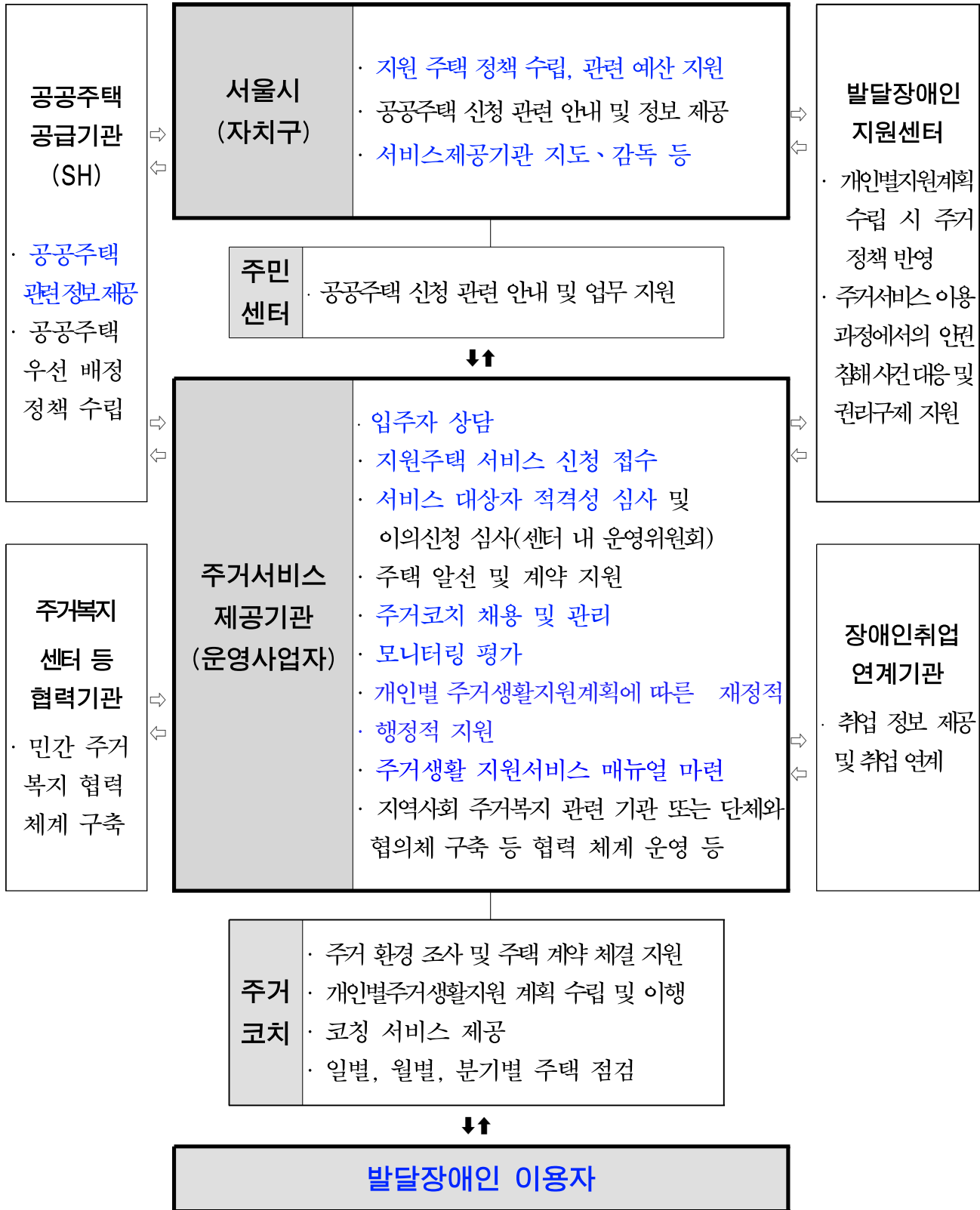
유 형	주 요 내 용
필수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택관련 : 주택 알선, 주택서비스 신청</li> <li>- 생활지원 : 가사 유지·관리, 식사관리, 외모관리, 금전관리 쇼핑하기, 시간관리, 의사소통 지원, 이동지원</li> <li>- 관계지원 : 심리상담, 동아리·모임 연계</li> <li>- 안전지원 : 안전 및 긴급 상황 대응, 권리와 책무 이해, 인권침해 대응, 건강관리, 24시간 긴급 대응 지원 등</li> </ul>
선택서비스	친구, 집안관리, 가정내 지원, 개인 응급 시스템 지원(전자통신시스템), 가정 내 교육서비스 제공(일상생활 기술, 사교기술 등)

※ **주거코치 배치 기준(안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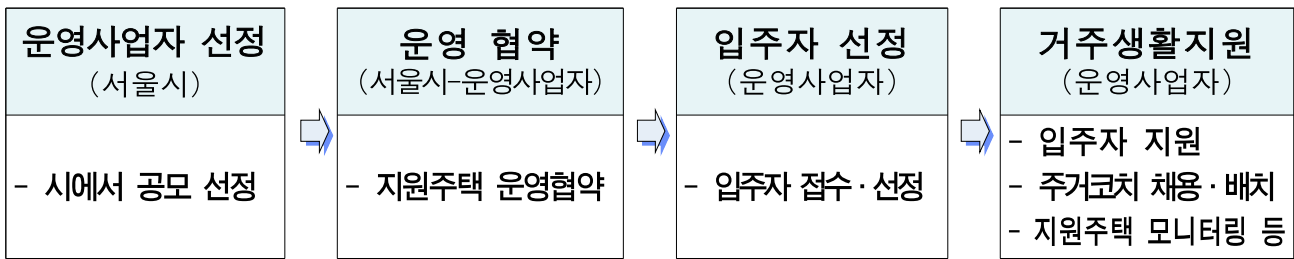
- 활동보조인 이용 유무, 장애정도, 특성 및 서비스 욕구에 따라 배치 조정

구 분		A기준 (활동보조인 미이용시)	B기준 (활동보조인 이용시)
경증	1인	2주택에 주거코치 1인 (장애인2 : 주거코치1)	3주택에 주거코치1인 (장애인3 : 주거코치1)
	2인	2주택에 주거코치 1인 (장애인4 : 주거코치1)	3주택에 주거코치 1인 (장애인6 : 주거코치1)
	3인	2주택 주거코치 1인 (장애인6 : 주거코치1)	3주택에 주거코치 1인 (장애인9 : 주거코치1)
중 증		1주택 주거코치 2인 (장애인3 : 주거코치2) ※ 공동주택이 방2개 입을 감안, 1주택 2인도 주거코치 2인 배치 가능 (단, 활동보조인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)	

# 주거서비스 지원 체계도



## □ 추진절차



### ○ 운영사업자 선정·협약(8월)
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(1개 기관)
- 신청자격 :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
- 선정기준 : 발달장애인 사업추진 실적 등(발달장애인 이해도가 높은 기관 우선)
- 협약 : 지원주택 운영·지원에 관한 협약

### ○ 입주자 선정(8월~)

- 신청접수 : 운영사업자가 입주 신청 접수·선정
- 선정기준 : 자립의지, 지원서비스 필요성 등
- 선정방법 : 입주자 선정위원회 구성·운영(시와 협의)

### ○ 거주생활지원(거주인 입주 ~)

- 지원인력 : 주거코치(운영사업자가 주거코치 계약, 배치)
- 지원방법 : 개인별 주거생활지원계획 수립에 의거 지원

## V 행정사항

### □ 기관별 역할

- 장애인복지정책과 : 운영 총괄
  - 체험형 주택 확보, 운영기관 선정, 운영비 지원, 시범운영 종합성과평가 등
- 운영사업자 : 입주자 관리 전반, 지원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
  - 입주자 선정·서비스 제공, 주거코치 채용·교육·배치 등, 지원생활 서비스 매뉴얼 제작, 운영비 정산 및 시범운영 결과 보고 등
- 자 치 구 : 운영비 교부, 운영기관 지도·감독
- S H 공 사 :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

**추진일정**

- 운영사업자 선정 · 협약 체결(장애인복지정책과) : '17. 8.
- 입주대상자 선정 · 서비스지원 개시(운영사업자) : '17. 8. ~

**향후계획**

- 시범사업 이후 운영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 검토

붙임 : 공공임대 주택 현황 1부



## 발달장애인 지원주택(체험형) 현황

연 번	주 소	계약형태	전세보증금 (천원)	주택 관리기관
계	5 개소		181,000	
1	양천구 오목로 29길 20 (신정동 925-33,34,37 서도휴빌2차 가동)302호	전세	37,360	양천 주거복지센터 (T.2620-6700)
2	양천구 오목로 29길 20 (신정동 925-33,34,37 서도휴빌2차 가동)402호		36,210	
3	양천구 오목로 29길 20 (신정동 925-33,34,37 서도휴빌2차 가동)403호		36,320	
4	양천구 오목로 29길 20 (신정동 925-33,34,37 서도휴빌2차 가동)502호		35,480	
5	양천구 오목로 29길 20 (신정동 925-33,34,37 서도휴빌2차 가동)503호		35,630	